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50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기동

피 고 B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호

변 론 종 결 2021. 8. 19.

판 결 선 고 2021.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3. 21. 접수 제1750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위

-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32필지’라 한다)은 강원 원성군 C 임야 64정 4단 2무보에서 순차 분할된 토지로서, 그에 관한 토지(임야)조사부, 토지(임야)대장, 부동산등기부 등의 공적장부는 모두 625 당시 멸실되었다.
- 2) 이 사건 32필지 중 별지 목록 제1, 4, 5, 6, 8, 11 내지 31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71. 3. 22. 구 임야대장상 D 명의로 지적이 복구되어 1971. 4. 30.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1971. 12. 3. ‘E’ 명의로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등기부가 전산화되면서 위 각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가 ‘F’으로 표시되었다가 2000. 12. 21. 전산이기 오류를 이유로 ‘F’에서 ‘E’으로, 2001. 2. 23. 신청착오를 이유로 ‘E’에서 ‘G종회’로 각각 경정되었다.
- 3) 이 사건 32필지 중 별지 목록 제2, 7, 10, 32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85. 6. 24. ‘H종중’ 명의로 지적이 복구되어 그 무렵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01. 2. 23. 신청착오를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H종중’에서 ‘G종회’로 경정되었다.
- 4) 이 사건 32필지 중 별지 목록 제3, 9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71. 3. 22. 구 임야대장상 ‘I종중’ 명의로 지적이 복구되어 그 무렵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이 2000. 9. 19. 전산이기 오류를 이유로 ‘I종중’에서 ‘H종중’으로, 2001. 2. 23. 신청착오를 이유로 ‘H종중’에서 ‘G종회’로 각각 경정되었다.
- 5) 그 후 2006. 3. 21. 이 사건 32필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06. 2.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3. 21. 접수 제17507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E 관련 종중의 형성 및 조직화 과정

- 1) 조선 J의 장인으로서 K씨 13세인 E은 광해군 때 L의 왕위옹립 문제와 관련된 계축사옥으로 1자 M, 2자 N, 3자 O과 함께 옥사하였고, M의 1자 P, 2자 Q, 3자 R, N의 독자 S만 살아남았으며, P은 1자 T, 2자 U, 3자 V을 두었다.

2) 그 후 인조반정으로 E 일가가 신원되어 E에게 W의 시호가 내려지고 경기도 양주군에 있던 E의 분묘가 원주시 X리로 이장됨에 따라 그 후손인 M, Y 등의 분묘도 X리에 조성되었고, T의 분묘는 X리에 인접한 원주시 Z리에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E의 후손 중 X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E, M, Y 등의 분묘를, Z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T 등의 분묘를 각 관리하게 되었으며, X리에서는 ‘AA종약계’가, Z리에는 ‘T종약계’가 각 형성되었다. AA종약계와 T종약계는 각각 대표자를 달리하였고, 관리하는 분묘와 토지도 각 상이하였으나, 위 각 종약계의 구성원들은 사실상 동일하였고, 상호 왕래를 하며 일정한 날을 정하여 함께 시제를 지내고 종회도 함께 개최하였으며, 다만, 위 시제나 종회는 X리에 거주하는 후손들의 수가 많아 AA종약계가 중심이 되어 이를 운영하였다.

3) 그런데, T의 종손인 D가 1995년경부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원주시 X리 일대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하자, T의 후손들은 D 명의의 부동산이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렵 ‘종중명칭을 B종중으로 하고, 종원의 자격은 T의 자손으로서 세대를 구성한 기혼남자로 하며 위선사업, 제례봉향, 친목과 상조, 종재의 수호 및 관리 등의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의 성문의 종중규약을 만든 후, 2002. 12. 1. 총회를 개최하여 T종약계와 AA종약계를 통합하여 B종중으로 칭하기로 하고, AB을 B종중의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한 후, 종중재산의 처분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중규약을 추가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조직화된 종중이 피고이다.

4) 1982년과 1984년경에 각각 발행된 K씨세사에 의하면, K씨 7세 AC의 제6자 AD의 후손을 ‘AE’라고 칭한다고 하면서, AE에서 분파된 종중에 대하여는 P이 1자 T, 2자 U, 3자 V와 여덟분의 따님을 두었는데, 13세 E의 묘소와 사우가 X리에 모여져 있어 1자 T의 후손이 일찍부터 원성군(원주시의 옛 명칭임) X리를 중심으로 그 지방 일대에 세거함으로써 ‘B종중’(속칭 AF)이 되었고, 2자 U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은 AG종중이 되었으며, 3자 V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은 AH종중이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D는 2007년경 K씨 E의 후손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G종회’(원주시 AI 소재, 이하 ‘AJ’라

한다)’ 명의로 피고 등을 상대로 ’AJ’가 이 사건 32필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07가합510호로 이 사건 3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5. 14. D에게 ’AJ’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을 이유로 D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AJ’가 서울고등법원 2009나46776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10. 19. D는 ’AJ’의 적법한 대표자이고 소제기도 적법하나, ’AJ’는 이 사건 32필지에 관하여 ’F’, ’H종중’ 또는 ’I종중’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32필지를 소유관리할 만큼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AJ’를 ’F’, ’H종중’ 또는 ’I종중’과 동일한 종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J’가 이 사건 32필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AJ’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AJ’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대법원 2011다102622) 소를 각하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선행 1차 소송’이라 한다).

2) 원고의 대표자인 AK은 2016년경 K씨 E의 후손들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G종회(고양시 덕양구 AL1) 소재, 위 단체가 앞서 본 선행 1차 소송의 원고인 ’AJ’와 동일한 단체인지 불분명하므로, 이하에서는 ’AJ’와 구분하여 ’AM’라 호칭한다)’ 명의로 피고를 상대로 ’AM’가 이 사건 32필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6가합6206호로 이 사건 32필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6. 29. ’AM’는 이 사건 32필지에 관하여 ’F’, ’H종중’ 또는 ’I종중’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이 사건 32필지를 소유관리할 만큼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AM’를 ’F’, ’H종중’ 또는 ’I종중’과 동일한 종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M’가 이 사건 32필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AM’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AM’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통틀어 ’선행 2차 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조선 J의 장인으로서 K씨

13세인 E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인 원고의 소유인데, 원고 종중의 대표인 AN가 1971. 12. 3.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원고의 정식 명칭이 아닌 ‘E’으로 잘못 등기를 하였다. 나. 이후 피고의 회장이던 AB은 원고와는 별개인 ‘G종회’라는 종중유사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음을 이용하여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명칭을 ‘G종회’로 변경하였고, 다시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종중이고2) AK이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1)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참조).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중이 특정 시점에 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기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그 권리귀속의 주체에 관한 문제, 즉 본안에 관한 문제로서 종중의 당사자능력과는 별개이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참조).

2)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등 참조).

3)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나,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적법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구체적 판단

1) 갑 제5, 6, 8 내지 10,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6. 20.에 종중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원고의 종원 약 8,500명의 명단을 작성한 후 2017. 6. 10. 대중회보에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고, 2017. 6. 12. E의 후손 중 연고항존자인 AO 명의로 원고의 종원 중 주소가 파악된 7,869명에게 소집통지서를 보냈다.

나) 2017. 6. 20. 개최된 원고의 종중총회에는 종원 43명(참석위임 1명 별도)이 참석하여 원고 규약을 전면 개정하고, 원고의 대표자(회장)로 AK를 선출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반환소송에 관하여 AK에게 변호사 선임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위 2017. 6. 20.자 종중총회에서 의결된 원고의 규약 제2조. 제5조에는 원고가 K씨 제13세 E의 후에 중 성인을 종원으로 하여 선영을 수호하며 상호 돈목하고 자손창달을 도모하는 종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종중 규약은 2019. 3. 27. 한 차례 개정되었다.

2)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6. 20.자 종중총회 당시 가능한 범위에서 최선을 다해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2017. 6. 20.자 종중총회를 통해 AK을 대표자를 선출하고 규약을 마련하는 등 단체의 구성과 유지를 위한 조직을 갖춘 점, ③ 주소가 파악되지 않은 일부 종원에게 개별 소집통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종중총회의 소집 과정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위 종중총회 후 2019. 3. 27. 종중 규약을 개정하고 2020. 1.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지속하여 활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갖추고 있고, AK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 2) 어느 토지가 종중의 소유라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어느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의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관리할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E’와 동일한 실체를 가지는 종중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1901년 작성된 K씨파보(AP)에서 E의 후손을 'AQ', E의 형인 AR의 후손을 'AS'로 지칭하면서 AQ의 족보를 기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종족단체이고, 종중이 성립되는 것과 조직을 갖추어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K씨파보의 기재내용에서 곧바로 E을 시조로 하는 종중이 1901년경 이후로 1971년경까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계속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인 1982년과 1984년, 1987년 무렵 각각 발행된 K씨세사나 K씨 정묘대동보에는 'AE'에서 분파된 종중으로 'B종중', 'AG종중', 'AH종중'만이 언급되고 있을 뿐 E을 시조로 하는 종중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1982년 K씨세사에는 K씨와 AT씨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근거자료로 앞서 본 1901년 작성된 AP를 인용하고 있음에도, E을 시조로 하는 종중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K씨세사 등의 문서가 작성될 무렵에는 실체를 가지고 조직을 갖추어 활동하는 'E을 시조로 하는 종중'은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G종회'는 원고와 다른 실체를 가진 종중유사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D와 원고의 대표자인 AK은 'G종회'가 E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이 사건 32필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선행 1, 2차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과 이 법원은 'G종회'가 E의 후예로 구성된 종중이고, 1981년경 또는 1985년경부터 조직을 갖추어 활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32필지에 관하여 'F', 'H종중' 또는 'I종중'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인 1971년경에는 'G종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관리할 만큼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① 이처럼 원고의 대표자나 T의 종손조차 E을 시조로 하는 종중의 실체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인 점, ②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1971년경 조직과 실체를 갖추어 활동하였다면, 1981년경부터 'G종회'가 E을 시조로 하는 종중을 자처하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실체와 과거 활동은 원고가 아닌 다른 단체의 실체 및 활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71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관리할 정도의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는, 원고가 1974년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원고의 명칭과 대표자(AN)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과거부터 조직을 갖추어 활동한 종중이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1974년경 AN를 대표자로 하여 ‘E’ 명의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위 계약서에는 ‘E’이 ‘A종중’을 지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① 원주시 X리 일대의 일부 토지는 E, G종회, H 종중, AU 종중, AV 종중, AW 종중, AX 종중 등의 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는데, 위 각 종중 명의로 단체등록번호를 받을 당시 제출된 각 종중규약에서는 종원의 범위도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결의서 상의 종중 대표자 및 종중원들은 모두 AA종약계 또는 T종약계의 종원 일부이며, 각 종중의 주사무소는 모두 ‘원주시3) AY’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에도 소유명의자인 ‘E’의 주소가 ‘원주시 AY’로 기재되어 있었고, 앞서 본 지상권설정계약서에도 같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의 대표자였던 AB은 D가 원주시 X리 일대에 소재하는 자신 명의의 토지를 처분하자, 각 토지가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및 ‘G종회’ 등의 명의로 D 등을 상대로 수차례 소송을 한 바 있고, 위 소송과정에서 AA종약계의 대표자였던 AZ은 ‘AA종약계의 주도하에 E, Y 등의 위토를 각 등록하기 위하여 허위의 규약과 결의서를 첨부하여 E종중 등의 명의로 단체등록을 하고 그 명의의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또는 ‘A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가상의 종중 명칭일 가능성이 높고, 위 지상권설정계약서만으로 원고가 1971년경 조직과 실체를 가진 종중으로 활동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1961. 6. 19. BA종중과 고양시4) BB리 소재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 귀속 분쟁을 하다가 화해조서가 작성되었고, 위 화해조서에 따라 위 BB리 소재 토지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과거부터 조직과 실체를 갖추어 활동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던 'E'의 주소는 '원주시 AY'인데, 위 BB리 소재 토지들의 소유명의자인 'A종중'(이하 'BB리 토지 소유 종중'이라 한다)의 주소는 '서울 관악구 BC'인 점, ② BB리 토지 소유 종중은 2002. 4. 20. BA종중과 통합하여 'BD종회'로 명칭을 변경한 후 규약을 제정하였고, 그 이후로 2019. 3. 28.까지 여러 차례 규약을 개정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점, ③ 'BD종회'의 규약에는 종중의 기본재산으로 BE리 토지들만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등 원주시 X리 소재 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E리 토지 소유 종중은 원고와 별개의 실체를 가진 단체라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가 과거부터 활동한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위 자료 또한 대부분 BE리 토지 소유 종중에 관한 자료인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교식, 판사 정지원, 판사 홍순건

별지

1. 원주시 C 임야 490,508㎡
2. BF 도로 155㎡
3. BG 임야 2,186㎡
4. BH 도로 8,051㎡
5. BI 도로 2,527㎡
6. BJ 임야 2,737㎡
7. BK 임야 293㎡
8. BL 임야 645㎡
9. BM 임야 2,301㎡
10. BN 도로 1,065㎡
11. BO 임야 27,013㎡
12. BP 임야 27,011㎡
13. BQ 임야 2,873㎡
14. BR 임야 2,691㎡
15. BS 임야 2,695㎡
16. BT 임야 2,637㎡
17. BU 임야 2,273㎡
18. BV 임야 2,213㎡
19. BW 임야 2,266㎡

- 20. BX 임야 2,285㎡
- 21. BY 임야 5,052㎡
- 22. BZ 임야 4,733㎡
- 23. CA 임야 2,897㎡
- 24. CB 임야 2,833㎡
- 25. CC 임야 4,700㎡
- 26. CD 임야 3,911㎡
- 27. CE 임야 4,413㎡
- 28. CF 임야 3,782㎡
- 29. CG 임야 4,206㎡
- 30. CH 임야 3,966㎡
- 31. CI 임야 7,850㎡
- 32. CJ 임야 13,633㎡. 끝.

- 1) 원고의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이다.
- 2)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는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 3) 과거에는 '원성군'이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주시'라고 한다.
- 4) 과거에는 '고양군'이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고양시'라 한다.